2025학년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장학금별 지급기준

❑ 사회적배려대상자 장학금(생활비성)

<table>
<tr><th>장학금명</th><th>지급기준</th><th>제출서류</th></tr>
<tr><td>보호시설퇴소자
장학금</td><td>❍ 지급대상: 「아동복지법」제38조 및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준비청년(구.보호종료아동) 또는 보호(연장)아동에 해당하는 재학생
-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대상자 지급
* 자립준비청년: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
* 보호아동: 대학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보호(연장)아동
❍ 성적기준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, 성적 2.6이상
❍ 지급금액: 금300,000원</td><td>① 공통서류(교내장학금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)
② 해당자 증빙서류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분</th><th>증빙서류</th><th>서류 발급처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보호
(연장)
아동</td><td>아동복지시설*</td><td>- 입소사실 확인서
- 아동복지시설 신고증(사본)</td><td>아동복지시설</td></tr>
<tr><td>가정위탁</td><td>- 가정위탁보호 확인서</td><td>시·군·구청 및
읍면동 행정복지센터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자립준비청년
(보호종료아동)</td><td>- 보호종료확인서</td><td>- 아동복지시설
- 정위탁지원센터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</td></tr>
</table>
* 「아동복지법」상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 4곳에 한함</td></tr>
<tr><td>다문화가정
자녀 장학금</td><td>❍ 지급대상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인 재학생
-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대상자 지급
❍ 성적기준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, 성적 2.6이상
❍ 지급금액: 금300,000원</td><td>① 공통서류(교내장학금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)
② 해당자 증빙서류(아래 중 해당하는 경우의 서류 제출)
• 부모가 귀화하지 않은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및 외국인 사실확인서(외국인등록증)
• 부모가 귀화한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및 귀화한 부모님 명의의 기본증명서(상세)</td></tr>
<tr><td>6.25 UN참전
용사 후손
장학금</td><td>❍ 지급대상: 부모 중 1명 이상이 외국 국적으로, 6.25 UN참전국* 참전용사 후손인 재학생
* UN참전 22개국(미국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영국, 프랑스, 그리스, 터키, 벨기에, 네덜란드, 룩셈부르크, 태국, 필리핀, 남아프리카공화국, 에티오피아, 콜롬비아, 인도, 스웨덴, 노르웨이, 덴마크, 이탈리아, 서독)
❍ 성적기준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, 성적 2.6이상
❍ 지급금액: 금300,000원</td><td>① 공통서류(교내장학금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)
② 해당자 증빙서류
• 참전용사 증명서
• 참전용사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*
* 국가보훈처 개최 ‘유엔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’ 수료증 대체 가능</td></tr>
</table>

※ 증빙서류는 2025. 7. 3.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.